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4. 7.



- 목 차 -

I . 일반사항	1
II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III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6
IV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32
V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양식>	3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서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업체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이하 “PQ평가”라 한다.)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의 업체를 모두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PQ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공사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지분율대로 미투입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

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6. 본 평가기준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 기준을 적용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상대평가지 업체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지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

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6.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7]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8.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1.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3.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2)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분야의 구성은 [붙임1]에 따른다. 다만,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명기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 실적 평가

-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한다.

- 3) 실적(건수)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붙임2]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text{개월}/12\text{개월}) \times 1\text{건}$ 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 4)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로 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5)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설계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 [붙임8]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

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1)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붙임3]에 맞춰 작성, 공문에 첨부하여 별도로 6부(원본 1부, 부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2)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업체별 등급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 3)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기술능력은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제시,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붙임4]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붙임3]를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내로 흑색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컬러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하여 0점 처리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분 5부(회사명

및 책임기술인명 등 일체 표기 불가) 총 6부 제출

아.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는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책임기술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율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평가방법(점수)

-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 : $\sum$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차.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기간 확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비(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나. 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2]에 의해 분류된 공종 중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공종의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내용서상 명시된 과업범위와 유사한 과업내용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명기한다.

예시) 시행예정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이 [붙임2]에 의한 단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과업내용이 기본계획, 지구계획, 개발 또는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실적)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예)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text{건} \times \text{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times \text{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0.3\text{건}$
- 실적금액 : $10\text{억원} \times \text{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times \text{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text{억원}$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마.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바.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참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등)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예)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1.0)

15. 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영업정지, 벌점 등 평가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 1)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5]할 수 있다.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하점수로 평가한다.)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7.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며,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나.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다.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술인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9. 젊은기술인 참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계		50	
	① 책임기술인	소 계	15	절대평가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절대평가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절대평가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④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절대평가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절대평가
	①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건수	6	
		실적금액	6	
	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③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 용 도	계		10	절대평가
	①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②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절대평가
	① 개발실적		2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3	
마. 업무중복도	계		10	절대평가
	① 책임기술인		3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④ 실무기술인		1	
바. 가점	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0.3	절대평가
	② 젊은기술인 참여		0~0.2	
[합 계]			100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건설엔지니어링비 5억원 이상 평가시 적용함.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0							
	소 계		15	◦ () 안은 5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1) 책임기술인	가. 등급	절대평가	3	특급 3.0		고급 2.0		중급이하 1.0	
		나. 경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4.0	15년미만 13년이상 3.6	13년미만 11년이상 3.2	11년미만 9년이상 2.8	9년미만 2.4	
		다. 실적	절대평가	8(5)	10건이상 8.0(5.0)	10건미만 ~8건이상 7.2(4.5)	8건미만 ~6건이상 6.4(4.0)	6건미만 ~4건이상 5.6(3.5)	4건미만 4.8(3.0)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3)	수 (3.0)	우 (2.7)	미 (2.4)	양 (2.1)	가 (1.8)	
		소 계		19	◦ 기술인별 점수합계의 산술평균값 적용.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절대평가	4	고급이상 4.0		중급 3.0		초급 2.0	
		나. 경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7.0	10년미만 8년이상 6.3	8년미만 6년이상 5.6	6년미만 4년이상 4.9	4년미만 4.2	
		다. 실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8.0	7건미만 6건이상 7.2	6건미만 5건이상 6.4	5건미만 4건이상 5.6	4건미만 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 기술인별 점수합계의 산술평균값 적용.					
		가. 등급	절대평가	4	중급이상 4.0		초급 2.0			
		나. 경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0	5년미만 4년이상 4.5	4년미만 3년이상 4.0	3년미만 2년이상 3.5	2년미만 3.0	
		다. 실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0	5건미만 4건이상 4.5	4건미만 3건이상 4.0	3건미만 2건이상 3.5	2건미만 3.0	
	(4)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 기술인별 점수합계의 산술평균값 적용.					
		가. 교육 훈련	절대평가	1	2주이상 교육 이수 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0.5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책임기술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평가방법(점수) -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을 적용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실적 건수	절대 평가	6	<table><tr><td>5건이상</td><td>5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 3건이상</td><td>3건미만 2건이상</td><td>2건미만</td></tr><tr><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6	<table><tr><td>50억이상</td><td>50억미만 40억이상</td><td>40억미만 30억이상</td><td>30억미만 20억이상</td><td>20억미만</td></tr><tr><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table><tr><td colspan="5">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td></tr><tr><td>3년 미만</td><td>3년 이상 5년 미만</td><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 colspan="2">10년 이상</td></tr><tr><td>1.0</td><td>0.8</td><td>0.6</td><td colspan="2">0</td></tr></table> ※ 평가방법(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을 × 당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을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0	0.8	0.6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0	0.8	0.6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공사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table><tr><td>평가 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6점 이상</td><td>86점 미만</td></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진흥법 제50조의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다. 신 용 도	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절대 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table><tr><td>없음</td><td>1개월</td><td>2개월</td><td>3개월</td><td>4개월</td><td>5개월이상</td></tr><tr><td>3.5</td><td>3.3</td><td>3.1</td><td>2.9</td><td>2.7</td><td>2.5</td></tr></table> ◦ 참여기술인이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table><tr><td>없음</td><td>1개월</td><td>2개월</td><td>3개월</td><td>4개월</td><td>5개월이상</td></tr><tr><td>3.5</td><td>3.3</td><td>3.1</td><td>2.9</td><td>2.7</td><td>2.5</td></tr></table>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3.5	3.3	3.1	2.9	2.7	2.5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3.5	3.3	3.1	2.9	2.7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3.5	3.3	3.1	2.9	2.7	2.5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3.5	3.3	3.1	2.9	2.7	2.5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별점 1.0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별점에 따라 감점																							
					<table><tr><td>1점이상 2점미만</td><td>2점이상 5점미만</td><td>5점이상 10점미만</td><td>10점이상 15점미만</td><td>15점이상 20점미만</td><td>20점이상</td></tr><tr><td>-0.2</td><td>-0.5</td><td>-1.0</td><td>-2.0</td><td>-3.0</td><td>-5.0</td></tr></table>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붙임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조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을 적용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을 적용																							
	(1)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배점 (건당)</th><th colspan="3">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th></tr><tr><th>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 ~20년 미만</th></tr><tr><td>신 기 술</td><td>2.0</td><td>-</td><td>-</td><td>-</td></tr><tr><td>특 허</td><td>1.0</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0.5</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
	구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																								
(2)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table><tr><th>구분</th><th>1.50%이상</th><th>1.50%미만 1.25%이상</th><th>1.25%미만 1.00%이상</th><th>1.00%미만 0.75%이상</th><th>0.75%미만 0.50%이상</th></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구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마. 업무중복도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책임 기 술 인	절대 평가	3	<table><tr><td>구분</td><td>200% 이하</td><td>200%~ 250%</td><td>250%~ 300%</td><td>300%~ 350%</td><td>350% 초과</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3.0	2.7	2.4	2.1	1.8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table><tr><td>구분</td><td>200% 이하</td><td>200%~ 250%</td><td>250%~ 300%</td><td>300%~ 350%</td><td>350% 초과</td></tr><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table> *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 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4.0	3.6	3.2	2.8	2.4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table><tr><td>구분</td><td>200% 이하</td><td>200%~ 250%</td><td>250%~ 300%</td><td>300%~ 350%</td><td>350% 초과</td></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 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2.0	1.8	1.6	1.4	1.2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2.0	1.8	1.6	1.4	1.2																
(4) 실무 기 술 인	절대 평가	1	<table><tr><td>구분</td><td>200% 이하</td><td>200%~ 250%</td><td>250%~ 300%</td><td>300%~ 350%</td><td>350% 초과</td></tr><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 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1.0	0.9	0.8	0.7	0.6		
구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점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 평가	0~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tr><td>구 분</td><td>1%이상 2%미만</td><td>2%이상 3%미만</td><td>3%이상</td></tr><tr><td>점 수</td><td>0.1</td><td>0.2</td><td>0.3</td></tr></table>						구 분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점 수	0.1	0.2	0.3				
	구 분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점 수	0.1	0.2	0.3																		
	젊은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 0.2	◦젊은기술인 참여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tr><td>구 분</td><td>5% 이상</td><td>3% 이상</td><td>1% 이상</td></tr><tr><td>점 수</td><td>0.2점</td><td>0.15점</td><td>0.1점</td></tr></table>						구 분	5% 이상	3% 이상	1% 이상	점 수	0.2점	0.15점	0.1점				
구 분	5% 이상	3% 이상	1% 이상																			
점 수	0.2점	0.15점	0.1점																			

[붙임1]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분야 및 기술자격 인정범위

구분		참여분야	기술자격 분야
조사		토질및기초 , 측량	- 토목분야
계획	지구단위, 경관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등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및공항, 조경, 교통	- 국토개발 - 토목 - 교통 - 건축, 기계 등
	기본설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상하수도, 도로및공항, 조경	- 토목분야, 국토개발분야
	실시설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상하수도, 도로및공항	- 토목분야
	영향평가	환경	- 환경분야
영향 평가	교통	교통	- 교통분야
	재해	수자원개발	- 토목분야
	인구	도시계획	- 국토개발
도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교통, 환경, 측량	- 토목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조경		조경계획, 조경설계	- 국토개발분야

※ 2공종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함께 발주하는 경우 참여분야는 수행하고자하는 주요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평가분야를 선정한다.

※ 발주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 대상 분야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입찰공고시 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붙임2]

공종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공 종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
교 량	교량공사
도 로	폭 6m 이상인 도로로써 시·군도, 지방도, 국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터 널	터널공사
단 지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개발사업 ③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④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舊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⑧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⑪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 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⑫ “공공주택 특별법”(舊)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 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⑯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 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 ⑲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⑳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평택시개발사업 ㉑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㉒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공사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조 경	단지분야 인정범위중 ①②③④⑤⑦⑧⑨⑩⑫⑬⑭⑮⑯⑰⑱⑲⑳㉑㉒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폐수처리장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처리장

※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으로 평가함.

※ 위 표의 공종이 없거나 유사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는 규모,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입찰 공고시 제시한다.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사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사업수행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4]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5]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6]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〇〇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사 업 자 번 호					팩 스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 제 유 형	
	연 구 과 제 명					총 연 구 기 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 여 형 태	연 구 수 행 (참 여) 기 간	기 업 부 담 금 (현 금)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사업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 입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사 업 명						
발 주 청						

[붙임8]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사업명						
발주청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IV.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총 칙

이 지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 지침서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기한 및 제출 부수

- 1)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 2)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발주부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 3) 제출부수 : 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도)
 - 규 격 : A4(210mm×297mm)
 - 용 지 재 질 : 백상지(80g/㎡)
 - 표지는 무늬없는 무광택 250스노우지(코팅금지), 색상은 White(순백색)
 - 인쇄 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또는 복사본
 - 제 본 : 세로좌철(무사 무선철)

2.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 7) 증빙서류에는 해당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 및 부분에 **형광펜(노랑)**으로 표시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본)순서

- 1) 표지 (양식 1 참조)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양식 2 참조)
 -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 참조)
 - 첨부 : 공동수급 협정서
-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양식 4 참조)
- 5) 자기평가서 (양식 5 참조)
- 6) 회사의 일반 현황 (양식 6 참조)
- 7)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7 참조)
- 8)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8 참조)
- 9)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 · 경력 · 실적 (양식 9 참조)
- 1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양식 10 참조)
- 1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붙임 2 참조)
- 1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양식 11 참조)
- 13) 신용도 (양식 12 참조)
-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3 참조)
- 15) 업무중복도 (양식 14 참조)
- 1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5 참조)
- 17) 젊은기술인 참여 (양식 16 참조)
- 18) 기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양식 1】

접수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접 수 인

공고번호 :

사 업 명 :

발주기관 : 전 북 개 발 공 사

업체명 : _____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평가서작성자 :

FAX번호 :

전화번호 :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사 업 명 :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하여 제반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정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 . . .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번호	출자비율	비고
공동 이행					%	
					%	
					%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공동수급일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업체를 공동수급대표사로 한다.

【양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사 업 명 :

공동수급대표사 :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가. 항목별 평가점수(총괄표)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점수
가. 참여기술인	계		50	
	①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④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 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① 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실적건수	6	
		실적금액	6	
	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③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다. 신 용 도	계		10	
	①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②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① 개발실적		2	
	② 투자실적		10	
	③ 활용실적		3	
마. 업무충첩도	계		10	
	① 책임기술인		3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④ 실무기술인		1	
바. 가점	계			
	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0.3	
	② 젊은기술인 참여		0~0.2	
[총 평 점]			100	

나. 평가점수 산출근거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산출근거
가. 참여기술인	계			
	①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④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① 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실적건수		
		실적금액		
	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다. 신 용 도	계			
	① 영업정지, 벌점 등			
	②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① 개발실적			
	② 투자실적			
	③ 활용실적			
마. 업무중첩도	계			
	① 책임기술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④ 실무기술인			
바. 가점	계			
	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② 젊은기술인 참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 하게 작성(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평가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평가한 점수를 기재.(단, 책임기술인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은 미기재)

【양식 6】

회사의 일반 현황

[대표업체/공동수급업체 구분 작성]

◎ 회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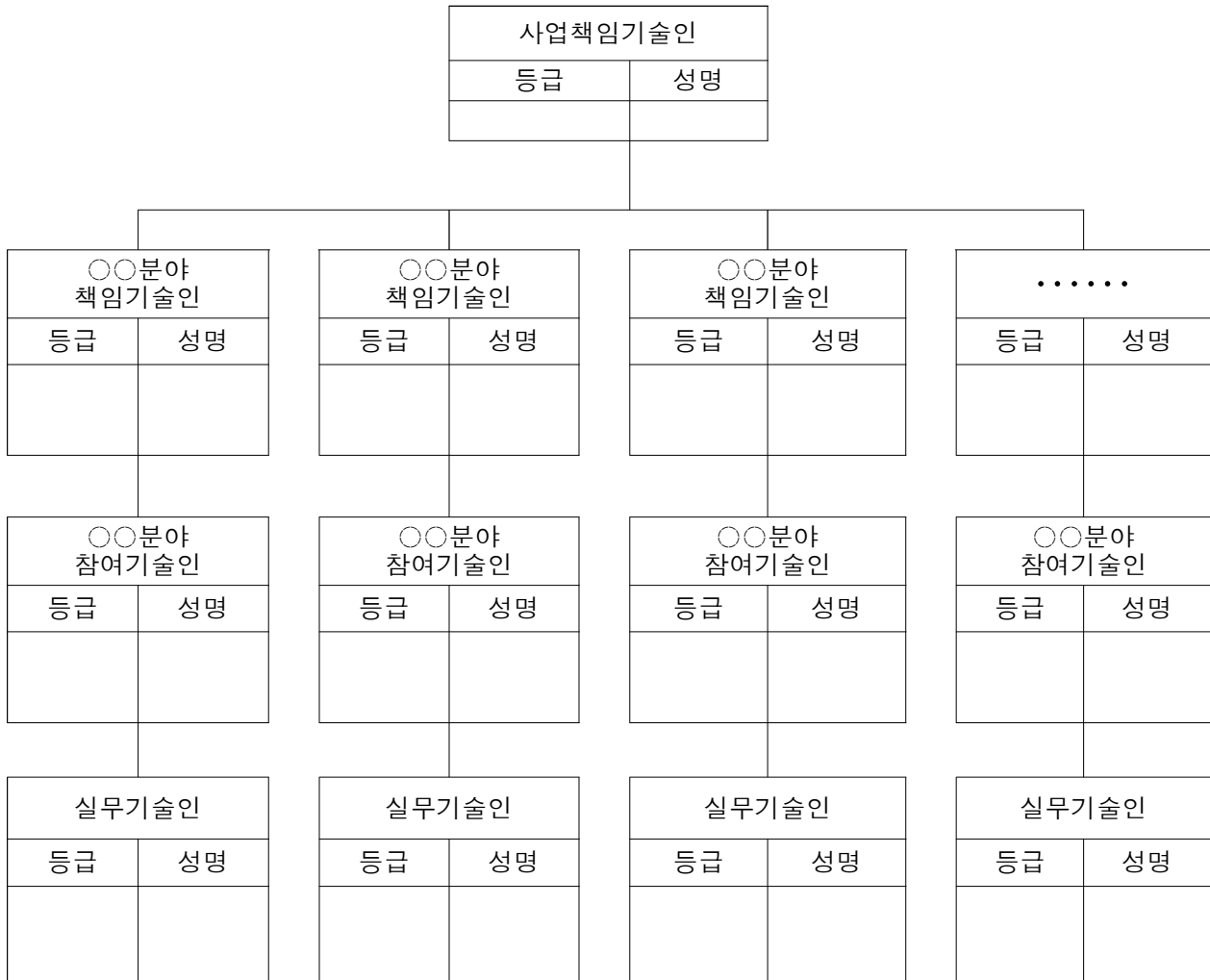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일		
7.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년 개월)		
8. 주 요 연 혁			

<작성요령 등>

- ① 사업자 등록증, 해당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한다.
- ②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첨부한다.
- ③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각각 작성 제출한다.

【양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작성요령 등>

- ①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최소 3개 분야(환경은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할 수 없다.
- ③ 분야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소 속 업 체 명	성 명	생년 월 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해당 전문 분야 경력 (년월)	이적 계수	입사일	해당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실 무 기술인													

<작성요령 등>

- ①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 ③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9】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가.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나.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작성요령 등>

- ①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 실적은 실적(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경력)확인서와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 ③ 참여기술인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1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 육 기 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 육 기 관	비 고

<작성요령 등>

- ①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1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청	과업기간	준공(지분)금액 (백 만 원)	준공(지분) 건수(건)	비고 (지분율)
					지분율 적용 금액 기재	지분율 적용 건수 기재	
계					()백만원	()건	

<작성요령 등>

- ①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준공실적(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만 작성한다.
- ②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와 발주청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 ③ 총괄사업에 의한 연차사업은 단일건으로 본다.
- ④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본 사 업 과 의 연 계 내 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 형 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12】

신 용 도

가.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1)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작성요령 등>

- ①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 ②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작성요령 등>

- ①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 ②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④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나.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별점

1) 업체

회 사 명	합 산 별 점	비 고

2) 참여기술인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합 산 별 점	비 고

<작성요령 등>

- ①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의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② 해당업체는 부실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 ④ 부실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⑤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년도		
7. 자본금(백만원)		
8.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작성요령 등>

- ①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 ④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기술개발 실적	신기술							
	계							
	특 허							
	계							
	실용신안							
	계							

<작성요령 등>

- ①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하여 작성한다.
- ③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 ④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⑤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작성요령 등>

- ①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분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②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용실적

구분	연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작성요령 등>

-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②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업 무 중 복 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라.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작성요령 등>

- ① 최초 계약이후 총 건설엔지니어링기간 변경시 증빙계약서류를 첨부한다.
- ② 과업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일 경우 참여업체는 반드시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 ③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산정하여 작성한다.
- ④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⑤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작성요령 등>

- 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첨부한다.
- ②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16】

젊은기술인 참여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고
계					

<작성요령 등>

- 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